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 정 섭**

〈요 약〉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민간경비, 신변보호관련법, 경비업법, 신변보호 자격증, 경호

* 본 연구는 2013년도 동국대학교 석사논문을 수정보완 작성한 논문임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신변보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 III. 신변보호 관련 규정 검토 및 문제점 IV.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 V. 결 론 |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적 경쟁력을 더 높이고 있다. 체육, 문화, 산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는 정부의 주도아래 민·관·군이 협력하여 안전하게 치르면서 대한민국이 안전지대(Safety Zone)라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하였다. 하지만 국내 정세는 정보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외국노동자의 국내 유입, 소득의 양극화 등의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범죄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는 또 다른 사회범죄 행위로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경비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배성수, 2005). 이에 따른 민간경비제도는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입법 되었으며, 한국의 용역경비는 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1995년 12월 30일 용역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제도가 신설되고 신변보호업이 경비업무에 추가 되었으며, 1999년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개명하였다(박병식, 1996).

신변보호업무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국가경비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경비의 주요한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다. 1995년 12월 30일 신변보호업무가 경비업무의 하나로 도입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미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박정섭 2013).

신변보호업무의 특성상 신변보호원은 행사장, 집단민원현장 등 대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일반시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도 도모하여야 하지만 행사장과 집단민원현장은 현행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행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성격이 서로 교차하면서 적합한 현장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이 시위자들을 분노케 하고 폭력적 사태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강경 대처는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집단민원현장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합한 초기대응이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모로 미비한 현행 경비업법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의 법·제도가 유사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변보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으며,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 신변보호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의 견해를 적극 활용하여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신변보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신변보호의 개념 및 정의

현재 신변보호는 경호 또는 호위¹⁾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

1) “호위(護衛)”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피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 보면, 이상철·김태민(2008)은 보편적 인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신변보호활동 및 호위적 성격이 주가 되는 업무수행 활동을 경호의 개념으로 정의 하였고, 안황권(2009)은 신변보호업무를 광의적으로는 공경비에 대한 공백을 민간경비가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협의적으로는 신변보호를 경호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경계’하고 ‘호위’한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신변보호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경호와 경비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호를 경비의 상위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제2조 정의에서는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변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경비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박정섭,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분야에 있어서의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취지에 따라,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 개념, 즉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는 정의를 원용하는 한편, 신변보호업무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호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변보호원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신변보호업무의 형태

1) 신변보호업무의 특징 및 중요성

신변보호업무는 다른 경비업무와 달리 인적 대상인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체 및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하정훈, 2015). 일본의 경우(身辺警備業務の手引, 2006)신변보호업무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신속 정확한 조치요령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 활동은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는 호위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일정할 뿐 실질적인 신변보호 활동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성을 띠고 있다. 즉 공경호의 경우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거의 특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활동범주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신변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자체 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안황권, 2009). 그러나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의 경우는 다양한 직업과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의뢰인 때문에 신변보호 환경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신변보호 활동을 일정한 범주 내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공경호에 비해 신변보호원이 수행하는 신변보호는 소수가 신변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호신용구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범인이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원이 부상당할 가능성도 있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신변보호업무의 형태

양재열(2012)은 장소에 의한 신변보호로 행사장, 숙소, 연도(노상) 등으로 나누었다. 행사장 신변보호라 함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행사 목적에 의하여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장소를 경비하는 것으로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비교적 장시간 머물거나 일반 군중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거리가 근접하게 되는 등 취약점이 많아서 완벽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본 신변경비업무(身辺警備業務の手引, 2006)지침서에서는 숙소 신변보호를 신변보호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저, 사저 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출장지 등에서 숙박하는 호텔과 기타 숙소에서 보조, 동초(動哨), 순찰, 출입감시 등을 실시하며, 수상한 자의 접근 및 침입방지, 위험물의 조기 발견·제거 등을 실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변보호 업무라고 규정 하였다. 숙소에 대한 신변보호는 행사장 신변보호에 준하나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점과 야간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히 고려되어야 하며(양재열, 2012), 행선지 신변보호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행선지 및 그 주변에 신변보호 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수상한 자와 위험물을 발견하고 그 밖의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신변보호 대상자가 출발하기까지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변보호 업무를 말하며, 연도 신변보호 업무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등에 동승하여 주변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상한 자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변보호 업무이다(身辺警備業務の手引, 2006).

3. 신변보호의 유형별 검토

국내 신변보호 유형은 공경호와 사경호(신변보호)로 대분류 할 수 있다. 공경호는 국가 공권력의 바탕 위에 국가원수 및 수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이며, 사경호 즉, 신변보호업무는 의뢰자와 신변보호업자간의 계약에 의한 업무이며 자연인 누구나 신변보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박정섭, 2013).

공경호 업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안성, 전문성, 기동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는 사경호의 신변보호와는 신변보호 대상 자체가 다른 관계로 경호의 목적과 법적 근거, 경호구교, 공권력성의 유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공경호의 경호 체계 및 조직은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특별행정관청인 대통령경호실과 일반경찰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홍정선, 2007). 국가 공권력의 바탕 위에 국가 원수 및 수반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총력경호 체제의 형태를 보인다.

사경호 즉, 신변보호는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 제2조제1호 다목에 의거 신변보호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신변보호업의 유형별 설정은 < 표 1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각도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신변보호의 유형별 분류

유형	업무 분류	법적관계
수행(동행)	국가요인, 국·내외 기업가,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하는 근접 신변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업무 (제2조제1호 다목)
에스코트	일반여성, 법원동행,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업무 (제2조제1호 다목)
행사장	스포츠경기, 콘서트, 주주총회, 기업행사, 장례식장, 전시·박람회장, 모델하우스, 등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업무 (제2항제1호 다목) 시설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제2조제1호 가목)
집단민원 현장	집회·시위장소, 의료사고 발생병원, 선거 유세장, 종교분쟁, 재개발·재건축 등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업무 (제2조제1호 다목) 시설경비업무 (제2조제1호 가목)

현행 경비업법은 혼잡경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비업법(법률 제 13814호, 2016)제2조제1호 가목에서는 시설경비업무의 정의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잡경비를 시설경비업무에 포함시켜 행사장 및 집단민원 현장에서 장소의 혼잡상태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경비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Ⅲ. 신변보호 관련 규정 검토 및 문제점

1. 허가요건

1) 신변보호업의 요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허가기준에 대해 규정한 것은 1995년 12월 30일 개정법이 최초이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1996년 7월 1일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9일 시행령 일부개정에서 교육시설의 기준을 ‘00명이상’으로 하지 않고,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으로 일괄 하여 규정 하였다. 2011년 7월 7일 개정에서는 자본금의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박병식, 2011), 최근 2013년 6월 7일 개정에서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다.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제4조²⁾의 자본금과 시설을 제외한 경비인력, 장비 등의 기준은 현행 경비업법상 허가요건이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경비인력 확보 계획은 정식 채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비확보계획에 있어서도 실제 업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닌 가스총을 기존 경비인력 이상의 수로 확보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섭, 2013). 이러한 형식적인 규정은 비전문가의 업체 설립이 용이하며, 이는 잦은 업체의 설립 및 폐업으로 이어져 시장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변보호 업무는 특성상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경비업을 추가로 허가 받아 운영하면서 정직원 정족수의 기준이 없어

2)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제4조는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자본금 1억원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시설, 장비 등이 있다.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대다수이다.

2. 신변보호업자 및 신변보호원의 의무

1)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 민간경비 시장의 현실은 경비업체의 포화상태로 인해 도급주보다 도급을 받으려는 업체가 많다보니 과다경쟁으로 신변보호업체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박동균·김태민, 2010), 나아가 신변보호업자는 도급주로부터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자의 의무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법적 규제와 처벌조항이 미온적인데 기인한 것이다(박정섭, 2013).

2) 신변보호원의 의무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제15조의 2 제1항³⁾에 의거 신변보호원이 직무를

3) 경비업법 제15조의 2 제1항 신변보호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범위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 신변보호원의 물리적 행사는 법에서 열거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가혹한 폭력행위와 나아가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신변보호원들의 행위는 경비업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폭행, 협박, 상해죄에 해당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상의 폭행, 협박, 상해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신변보호원은 경비업법상의 신입교육만 이수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일용직(프리랜서)으로 다양한 분야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악용해 삼삼오오 팀을 만들어 경비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신변보호원들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및 노사가 대립되는 현장에 동원되어 불법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박정섭, 2013).

3. 자격증 제도

1995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 제5차 개정 시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경비지도사 제도는 관련분야의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이른바 현장 책임자라 할 수 있다(최선우, 2008). 하지만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높이는데 그 한계가 있다(박동균·김태민, 2010).

최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는 신변보호 전문가를 배출한다는 목적 아래 < 표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표 2 > 신변보호사 자격의 시험체계

	구분			시험시간	비고
	3개과목 80문제(5지 선다형)			1차 학과(필기)시험	1차 시험 (100점)
학과	민간경비론 20문항	경비업법 30문항	경호학 30문항	9:00 ~ 10:20 (80분)	
	연속동작			2차 실기시험 10:40 ~ 18:00 (7시간)	2차 시험 (100점)
	구분동작 5수	범인대응술 5수	체포연행술 5수		
실기	- 2개과목 A·B안 중 지정된 실기 구분·연속 시행 - 무도가산점(실기시험)은 경찰청 가산점에 한함 (무도 2·3단은 2점, 4단 이상은 실기 시험 성적에 4점 가산)				

※ 출처 :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www.ksan.or.kr)

국내에서는 경호·경비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사회교육원(혹은 평생교육원) 등 수 많은 교육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자격요건과 시험과목은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격의 등급과 검증과목, 검증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과 일반응시생, 군·경찰출신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변보호사의 개인자질과 능력에 따른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4. 교육·훈련

1) 신변보호원의 신입교육

신입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제1항⁴⁾,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⁵⁾,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⁶⁾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 표 3 > 과 같다.

< 표 3 > 을 살펴보면 신변보호원의 경비업무 특성과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각 업무별 실무교육이 2시간씩 배정되어 있어 신변보호업에 종사하는 신변보호원이 다른 3개의 경비업무의 실무과정을 6시간 이수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한 신입교육은 신변보호원의 전문교육 및 자질향상을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박정섭, 2013).

4)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입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영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표 3〉 일반경비원⁷⁾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지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호신술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 (1시간)	입교식, 평가, 수료식	1
계		24

※ 출처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조제1항 관련

2) 신변보호원의 직무교육

신변보호업에 종사하는 신변보호원은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 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직무교육을 4시간 받도록 되어 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하지만 대다수의 영세한 신변보호업체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일용직을 고용해 업무수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변보호원이 현장배치 될 때 경비지도사가 직무교육을 한시적으로 시킬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수반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7) 경비업법 제2조 제3항 가목에 의해 신변보호원은 일반경비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5. 관리·감독

현행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제24조제1항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지도사를 비상근으로 고용하여 경비업무가 발생될 시 한시적으로 지도업무를 수행하곤 한다. 이러한 지도 방식은 신변보호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부족으로 더 큰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

동법 제4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신변보호업무 특성상 의뢰인의 갑작스런 신변보호요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며 신변보호업 자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임을 고려하면 현행 경비업법상의 사전 배치신고제도는 큰 모순이라 볼 수 있다. 즉,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경찰이 어떤 근거로 배치의 가부(可不可)를 판단할지도 의문이다(박정섭, 2013).

6. 손해배상

신변보호업의 경우 신변보호원이 경비대상 외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많으며, 제3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신변보호업자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민사소송상의 입증곤란이나 소송지연 등으로 손해배상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1999년 3월31일 경비업법 개정 전에는 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3월 31일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조정계획에 따라 신변보호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였다. 그래서 신변보호업자는 이러한 공탁·이행보증보험·공제의 가입의무는 없어졌으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업자의 자율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철·김태민, 2008).

신변보호원의 고의·과실과 신변보호업체의 책임문제는 오늘날 현실에서 볼 때 사용자 책임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박병식, 1996). 또한 신변보호업무의 특성상 신변보호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위험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아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도 고려되어야 한다.

IV.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허가요건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허가기준은 자본금 1억원이상의 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 자본금을 제외한 이하 사항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제2항).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모두 신변보호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신변보호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경비업법에 규정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가입규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신변보호업 허가를 정지 시킨다(박정섭, 2013).

국내 신변보호업의 허가요건을 제3장에서 살펴본 결과,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정직원 정족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급받은 신변보호업무를 다수의 영세한 신변보호업자에 하도급 또는 신입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구조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에서 신변보호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 인력·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 규정을 의무화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자격증 제도

국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신변보호업자나 신변보호원은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규정 되어있다(박정섭, 2013). 특히, 화기소지자자격증, 경봉소지자자격증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변보호원이 꼭 지참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이기도 하다.

국내 경비업법상 자격증제도는 일본과 유사하다. 현행 경비업법상 유일한 자격증 제도인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어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 경비업법에 추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자격증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교육·훈련

현행 신변보호원 신입교육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하정훈, 2015). 미국의 경우 테러 및 강력범죄와 총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기에 신변보호원의 화기사용, 체포권한 및 기타 보안장비 사용법에 관련된 교육·훈련 제도가 발전되어있다(박정섭, 2013). 이에 반해 일본과 한국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분류되어 이론교육, 실무교육, 기타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신변보호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교육 이론과목 중 경비업법을 3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업법 이외의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일반경비원이 업무수행 중에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충돌을 사전에 대비하고 방지 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시간이 추가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무교육에 있어서는 신변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신변보호원은 다른 3개 경비업무의 실무과정 6시간을 신변보호업무 실무교육에 추가하여 신변보호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관리·감독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은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상 법 규정이 미비하며 그 규정 또한 형식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태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비담당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관리·감독권이 고용자에게도 부여된다. 즉, 신변보호업무 수행 중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그 책임의

주체나 범위는 한국의 고용주보다 더 포괄적이다. 국내의 경우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찰청의 생활안전계는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며, 소수의 인원으로 수많은 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경비산업의 한 분야인 신변보호업은 그 활동범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 또한 그 체계 및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신변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주체인 경찰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변보호업자 및 신변보호원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손해배상

신변보호업무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원은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26조 제1항·제2항). 신변보호업의 경우 신변보호원이 경비대상 외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많으며, 제3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경비업자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국내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도급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해결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여부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경비업무의 특성상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험가입 여부는 경비업 허가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비업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져 안정된 기업운동을 영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허가요건에 보험가입규정의 의무를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내 신변보호업무는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 개정에 따라 경비업무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신변보호업체는 규모에 있어 매우 영세하며 전문화나 특성화를 이루기 보다는 다양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복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법적 구성요건이 동일해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가지게 된다. 신변보호업무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다양하며 그 활동 범주 또한 폭넓다.

신변보호는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 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근 그룹총수, 정치인, 연예인 등의 신변보호원이 피신변보호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등은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 하여 국내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원을 일반경비원에서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정직원 정족수 기준 법제화, 보험가입규정을 의무화 하여 업무성격에 따른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허가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변보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변보호원의 자격 등급과 검증과목, 검증방법 등을 보완해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자격을 획득한 신변보호원만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육·훈련에 있어서 이론과목으로 경비업법 외에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법률 교육시간을 추가하며, 실무교육에 있어서는 신변보호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나머지 3개 경비업무의 실무과정 6시간을 신변보호업무 실무교육에 추가하여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관리·감독에 있어서 경찰청은 그룹총수, 정치인, 연예인 등의 신변보호원의 인적사항과 그 수를 파악하여 경비업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신변보호 관련 대학 출신의 우수한 경찰인력을 전담부서로 통합하여 전문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손해배상에 있어 보험가입여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즉,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신변보호업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신변보호업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어 배상책임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이 유사하여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하여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일본의 경비업 제도는 최근까지도 경비업법 개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글로벌 표준화의 기준을 마련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 및 관련 규정을 매뉴얼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이외에 미국 및 유럽의 경비업법을 적극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필요한 법제도를 연구·개발하여 적합한 국내 모델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규 (2005). 경찰경비총서. 서울: 경찰대학.
- 김두현 (2010).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 박동균·김태민 (2010).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3~ 26.
- 박병식 (1996).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 박병식 (1996). 용역경비업법. 서울: 법률출판사.
- 박병식 (2011). 경비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9호, 98-99.
- 박정섭 (2013). 신변보호 법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준석 (2006). 민간경호·경비산업론. 서울: 백산출판사.
- 배성수 (2005).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철·김태민 (2008). 경호경비기획론. 서울: 진영사.
- 안황권 (2009). 민간경비사. 서울: 진영사.
- 양재열 (2012). 경호학원론. 서울: 박영사.
- 최선우 (2008). 민간경비론. 서울: 진영사.
- 하정훈 (2015).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4호, 199-223.
- 홍정선 (2007). 경찰행정법, 서울: 박영사.
- The Great Seal of The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 Security Guard Guide, 2012.
- 全国警備業協会 (2006). 身辺警備業務の手引.
- 경비업법 「법률 제13814호, 2016」
-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http://www.ksan.or.kr>.

【Abstract】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Park, Jung-Sub

Recently, Crime patterns in our society are diversifying as followed on the urbanization of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immigrants. Existing murder, kidnap, sexual assault, etc. Especially, the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violent abuse and even social hatred a crime, motiveless crime are spreading into every phase of national life.

Due to the social situation, the sharp increase in demand for personal protection, the scal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constantly expanded. Following this trend,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 it was enacted in 1995.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gulations adopted initially adopted has been maintained so far,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as they could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rivate security, being divorced from the realit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social chan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facility security service, the legal requirements of both services are identical with each other in terms. Such legal systems may cause confusion to security businesses and employees, or the police managing and supervising them, regarding the scope and duties of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the regulations of permission requirement that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system.

In this study, relevant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Act have been reviewed critically in this paper. And also the regulations were

review of thos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enacted in security industry Act, so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that are apposite to the cases in this country c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amend the current laws and provide real grounds for the law enforcement.

Keywords: Private security service, Personal protection Act, Security Industry Act, Personal protection license, Security guard